
Policy and Law Report _Vol.158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0.17~ 10.23) -

October 24,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산업통상
자원부

내용

•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발표

-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50대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확정함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지금까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하였던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넘어, 향후 가속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새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방향(안)**

- (정책대상) 對日/주력산업 중심 → 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

- (공급망) 공급망 위기대응력 부재 → 종합지원체계 구축

- (글로벌화) 국산화 중점 →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까지 지원

②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개편(안)**

- 기존 100대 기술 중 13개 삭제*, 신규 기술 63개 추가를 통해 총 150개 新핵심전략 기술 후보군을 발굴

* 산업중요도 재평가 및 기술확보전략 수정을 통해 10개, 유사품목 통합을 통해 3개 기술 제외

- 신규 63개중 대세계 대응 관련 32개, 미래산업 변화 대응 관련 31개

* 대세계 32개는 미국 13, 중국 9, 독일 3, 대만 2, 베트남 2, 프랑스 1, 인니 1, 일 1

- 부처별로는 산업부 116개, 과기부 10개, 중기부 24개

< 기존 100대 핵심전략기술 vs. 검토후 新핵심전략기술 비교표 >

구분	기존				변경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합계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합계(증감)	
반도체	8	2	6	17	22	2	8	32	(15)
디스플레이	8	-	2	10	10	1	3	14	(4)
자동차	8	-	4	13	11	-	4	15	(2)
기계금속	27	-	11	38	35	1	8	44	(6)
전기전자	16	1	1	18	19	6	-	25	(7)
기초화학	4	-	-	4	15	-	-	15	(11)
바이오	-	-	-	-	4	-	1	5	(5)
합계	73	3	24	100	116 (+43)	10 (+7)	24 (-)	150 (+50)	(50)

일시

2022-
10-18

부처	내용	일시																								
	③ 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안) - 수요-공급기업, 대학·연구기관·규제기관 등 관련 이해관계자간 공동 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연대·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대·중소 협력 제도 ④ GVC 재편대응특별위원회 운영경과 및 향후 계획 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 이행현황 점검																									
	참고 기존 소부장 대책 vs.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 <table> <tr> <th></th><th>기존 소부장 대책 ※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19.8월), 소부장 2.0 전략('20.7월) 등</th><th>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th></tr> <tr> <td rowspan="4">① 대상</td><td>국가 사실상 對日 중심 ※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對日 100대 품목 → 대세계 338대 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구체적 지원수단 부재</td><td>對세계 공급망으로 확장 ※ 핵심전략기술 확대(100개→150개) 등 실질적 지원수단 다수 포함</td></tr> <tr> <td>산업 우리나라 現 주력산업 중심 ※ 소부장 R&D 신규사업중 신산업 비중(산업부) : ('22) 9.3%</td><td>첨단미래산업 확대 ※ 소부장 R&D 신규사업중 신산업 비중(산업부) : ('23) 24.0%</td></tr> <tr> <td>품목 고난이도 기술 중심</td><td>범용품, 원소재 등 포함 ※ 법상 소부장 범위 확대, 공급망 안정품목 신설 등</td></tr> <tr> <td>유연성 미흡 ※ '20년 핵심전략기술 선정후 변경 無</td><td>상시적·주기적 변경 가능 ※ 핵심전략기술 주기적 재선정 등</td></tr> <tr> <td rowspan="4">② 지원</td><td>R&D 개별기업 지원 ※ 수요기업 참여, IP-R&D 의무화 등</td><td>관련 생태계까지 지원 ※ 대형 프로젝트, 다수 수요기업 연계, 표준연계 R&D 의무화 등</td></tr> <tr> <td>사업화 연구개발 완료후 연계</td><td>동시 기획·사업 추진</td></tr> <tr> <td>수출 고려 미흡</td><td>글로벌화 전략 마련 ※ 글로벌 진출 사업까지 연계 지원</td></tr> <tr> <td>협력 생태계 지정품목 중심 협력 ※ 100대 품목 신속한 공급망 구축</td><td>시장수요 기반 협력 ※ 민간투자 확대, 경쟁제도 도입 등</td></tr> <tr> <td>③ 방식</td><td>사후 대응 중심 ※ 日 수출규제, 요소수 수급난 등</td><td>사전 대응체계 구축 ※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td></tr> </table>		기존 소부장 대책 ※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19.8월), 소부장 2.0 전략('20.7월) 등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① 대상	국가 사실상 對日 중심 ※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對日 100대 품목 → 대세계 338대 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구체적 지원수단 부재	對세계 공급망으로 확장 ※ 핵심전략기술 확대(100개→150개) 등 실질적 지원수단 다수 포함	산업 우리나라 現 주력산업 중심 ※ 소부장 R&D 신규사업중 신산업 비중(산업부) : ('22) 9.3%	첨단미래산업 확대 ※ 소부장 R&D 신규사업중 신산업 비중(산업부) : ('23) 24.0%	품목 고난이도 기술 중심	범용품, 원소재 등 포함 ※ 법상 소부장 범위 확대, 공급망 안정품목 신설 등	유연성 미흡 ※ '20년 핵심전략기술 선정후 변경 無	상시적·주기적 변경 가능 ※ 핵심전략기술 주기적 재선정 등	② 지원	R&D 개별기업 지원 ※ 수요기업 참여, IP-R&D 의무화 등	관련 생태계까지 지원 ※ 대형 프로젝트, 다수 수요기업 연계, 표준연계 R&D 의무화 등	사업화 연구개발 완료후 연계	동시 기획·사업 추진	수출 고려 미흡	글로벌화 전략 마련 ※ 글로벌 진출 사업까지 연계 지원	협력 생태계 지정품목 중심 협력 ※ 100대 품목 신속한 공급망 구축	시장수요 기반 협력 ※ 민간투자 확대, 경쟁제도 도입 등	③ 방식	사후 대응 중심 ※ 日 수출규제, 요소수 수급난 등	사전 대응체계 구축 ※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기존 소부장 대책 ※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19.8월), 소부장 2.0 전략('20.7월) 등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① 대상	국가 사실상 對日 중심 ※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對日 100대 품목 → 대세계 338대 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구체적 지원수단 부재	對세계 공급망으로 확장 ※ 핵심전략기술 확대(100개→150개) 등 실질적 지원수단 다수 포함																								
	산업 우리나라 現 주력산업 중심 ※ 소부장 R&D 신규사업중 신산업 비중(산업부) : ('22) 9.3%	첨단미래산업 확대 ※ 소부장 R&D 신규사업중 신산업 비중(산업부) : ('23) 24.0%																								
	품목 고난이도 기술 중심	범용품, 원소재 등 포함 ※ 법상 소부장 범위 확대, 공급망 안정품목 신설 등																								
	유연성 미흡 ※ '20년 핵심전략기술 선정후 변경 無	상시적·주기적 변경 가능 ※ 핵심전략기술 주기적 재선정 등																								
② 지원	R&D 개별기업 지원 ※ 수요기업 참여, IP-R&D 의무화 등	관련 생태계까지 지원 ※ 대형 프로젝트, 다수 수요기업 연계, 표준연계 R&D 의무화 등																								
	사업화 연구개발 완료후 연계	동시 기획·사업 추진																								
	수출 고려 미흡	글로벌화 전략 마련 ※ 글로벌 진출 사업까지 연계 지원																								
	협력 생태계 지정품목 중심 협력 ※ 100대 품목 신속한 공급망 구축	시장수요 기반 협력 ※ 민간투자 확대, 경쟁제도 도입 등																								
③ 방식	사후 대응 중심 ※ 日 수출규제, 요소수 수급난 등	사전 대응체계 구축 ※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부처	내용	일시
대한상공회의소	• 투자애로 및 국민 불편체감 규제개선 과제 51건 정부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을 통해 기업·국민들로부터 제안받은 6개 분야, 51개 규제개선 혁신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검토와 규제개선 이행을 촉구함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애로 : 9건> ①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완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울산 에너지 융합 산업단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종 자체의 입주를 제한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입주업종 제한 완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허용기준 준수) ②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허용 (산업집적법 시행령) - 공작기계를 타 사업자와 공유할 경우, ‘공장 외 용도’ 사용으로 판단해 공장등록 취소 사유 - 공장시설의 일부를 유휴시간에 한해 공작기계의 공유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③ 소방시설공사사업법 분리도급 규정 완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시행령) -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의무에 따라 반도체 공정 신설시 9개 이상 기업에 소방공사 분리발주 필수 - 반도체 건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로 인정 ④ 공장건물 신축 및 설비변경시 교육환경평가 및 위험물 취급 관련 규제 개선 (교육환경보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설비 및 공장건물 신축 시마다 교육환경평가 의무 실시, 위험물 취급시설 변경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로 사업진행 애로 - 교육환경영향평가 완료 시점을 건축허가 대신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완화, 화재저위험군 취급 항목에 한해 화재예방조치 완료 시 완공검사 전 위험물 취급이 가능하도록 임시허가 부여 ⑤ 산업단지 분양용지에 대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통한 자산유동화 허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산업집적법) - 현행 산업단지 제도상 분양용지는 공장설립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5년 이후 처분 가능 - 초기 산업부지매입 및 공장설립에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분양받은 산업단지 용지 및 공장을 리츠에 매각, 임차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⑥ 산업단지 수의계약 공급가능 대상 확대 (산업입지법 시행령) - 산업시설용지 분양시, 광역지자체와 입주협약 체결한 기업으로 한정 - 수의계약으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가능한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입주협약 체결한 경우 추가	2022-10-14

부처	내용	일시
	⑦ 산업단지 복합용지의 산업시설면적 제한규정 완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산업단지의 복합용지내 산업시설 면적기준(건축물 연면적 50% 이상)이 과도하여 상업, 판매, 업무시설 등 입주수요 반영에 애로 - 산업시설면적 기준을 완화(30%)하고, 시설별 면적기준을 건축 연면적에서 부지 면적으로 개선 ⑧ 既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산업시설 용지 개별 건축물에 대한 중복된 교통영향평가 개선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시행령,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산업시설용지 내 비제조업종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중복 시행, 투자와 입주 지연 등 발생 - 교통영향평가 생략 특례대상을 수요검증이 완료된 유치업종 건축물까지로 확대 ⑨ 콘도 재건축을 위한 회원동의 비율 축소 (집합건물법, 건축법) - 콘도 건물 재건축시 회원 80% 이상 동의 필요 - 이민, 사망 등 연락두절 회원 고려한 경우 의무 동의 비율이 과도하여, 개발이 장기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 - 회원제 콘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재건축시 회원동의 비율을 50%로 하향 <신산업 : 14건> ① 상업용 CO₂ 세탁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상업용 CO₂ 세탁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대상으로, 설치 사전허가 및 신고와 안전관리자 3인 선임 의무 적용. 일반 세탁소에서 도입에 어려움 - 해외에서는 해당 제품이 20년 전부터 상용화되어 있고, 안전관련 사고도 전무한 만큼, 세탁기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를 고압가스관리법 미적용 대상에 포함 ② 영업용 차량 등록규제(차량충당 연한, 차령) 개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 자동차 제조기술 발달에 따라 차량 내구성이 향상되었으나, 과거 도입된 차량충당연한·차령제한이 유지되어, 운수업체 성장 및 다양한 혁신 서비스 출시 저해 - 영업용 차량의 충당연한 및 차령기준을 현재 자동차 내구성 및 평균수명 고려해 재검토 ③ 임대형 자가발전사업 활성화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 제3자가 발전소를 건설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임대하는 형태의 ‘임대형 자가발전사업’이 전기사업법상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 임대형 자가발전설비를 자가용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 또는 유권해석 필요 ④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관련기준 마련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등) - 안전인증 기준이 고정형 ESS에 한정, 이동형 ESS 배터리 관련 안전인증·확인기준이 미비. 소규모전력중개사업 해당여부도 불명확하여 관련 사업화에 어려움 - 안전인증·확인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사업법에 전기사업형태 (예:소규모전력중개사업) 명시	

부처	내용	일시
	⑤ 그린수소생산용 고분자전해질막 수전해설비 안전기준 재정립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등) - 구조적 특성상 파열시험의 시험압력을 견딜 수 없어 ‘압력용기’ 안전기준 적용 곤란 - 스택을 압력용기에서 제외하고, 수전해설비 및 고압스택에 대한 별도의 안전조건 마련 ⑥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관련 시설·기술·검사 기준 마련 (수소법 시행규칙) - ‘수소용품’의 제조허가 및 검사를 위한 암모니아 원료기반 현장 설치형 수소추출설비에 관한 기준이 없음 - 암모니아 원료기반 현장 설치형 수소추출설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마련 ⑦ 액화수소운반·추진선박 개발 기준 마련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등) - 액화수소 연료 선박 기준 및 액화수소 운반선박 안전기준 미비로 기술개발과 상용화 어려움 - 선박용 액화수소 충전시설, 액화수소운반 및 추진선박용 연료사용 기준 및 용기 안전기준 마련 ⑧ 비대면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성병원인균 유무 확인 허용 (의료법) - HPV 검사·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 안내 서비스(자가키트 검체채취 → 검사기관 전달 → 전문의 검사 → 비대면 결과 통보)는 원격의료에 해당되어 불가 - ‘자가키트 활용한 질병 원인균 유무 확인 행위’를 의료행위에서 제외 ⑨ 치과임플란트용 뼈이식재 심평원 등록 위한 평가허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 - 의료기관 내부에서 자가치아 뼈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불가 - 해당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또는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 內 관련 표준 마련 ⑩ 기계식 주차시스템 이용 전기차 충전 안전기준 마련 (전기용품 안전기준, 주차장법) - 주차와 전기자동차 충전, 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식 주차시스템은 충전기 연결 케이블의 길이 연장 금지, 주차장 내 충전기 등에 대한 주차장치 안전기준 부재로 상용화 애로 -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하여 케이블 연장 허용, 주차장 내 충전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⑪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 천막을 야영시설의 주재료로 한정하고 있어,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돔텐트의 야영장 공급 불가, 조립식 돔텐트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호 - 야영장의 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는 조항 삭제하고 가설건축물 종류로 돔텐트를 포함 ⑫ 자가용활용 옥외광고·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 규제 개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자동차규칙) - 자가용의 경우 차량 소유자 외 타인 광고 불가, 창문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 부착 가능, LED 디스플레이(전기 사용, 점멸) 차량 뒷면 부착 불가 - 타인 광고 부착 허용, 창문에 발광방식 광고 허용, 차량 뒷면 디스플레이 설치 허용	

부처	내용	일시
	⑬ 블록체인 기술 연계 P&E 장르 게임 허용 (게임산업법) - P&E 게임은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규제 대상에 해당하여 국내 서비스 불가 - 가상자산 콘텐츠 제공 게임물, 제공방식 및 유형에 따른 연령등급기준 마련하여 서비스 허용 ⑭ 공공데이터포털의 제2, 4 유형 공공데이터의 AI 교육용 사용 허가 (저작권법 등) - 제2, 4유형의 공공저작물 등의 상업적 이용 금지, AI 모델학습 (상업적 이용)에 공공저작물 이용 불가능 - AI 학습 등 교육목적인 경우 사용가능하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기준 개정 <환경 : 7건> ① 화평법·산안법 중복규제 일원화 / 화학물질 등록면제요건 일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화평법 등록면제 요건과 산안법의 유해성·위험성 제외요건 불일치 - 화평법 등록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 산안법상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②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허용 및 변경신고 기준 합리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생산자의 현황 변경시, 선임자의 지정절차를 반복해야 해 행정상의 비효율 발생 - 기업 합병, 분할 등에 따른 지위 승계를 법률로 명시, 화학물질등록시스템에 지위 승계 기능 반영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변경 제출 대상 및 시점 합리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안법에 제조·수입업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변경사항 제출기한을 “지체없이”로 규정해 기업은 불필요한 소명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 화학물질 함유량 변경이 미미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변경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 및 수입업자의 변경사항 통보 기한을 ‘변경사항을 알게 된 날’로 명확화 ④ 열분해유 연료화 기준 및 표준산업분류코드 신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집적법 시행령 등) - 열분해유 연료화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고, 열분해유 제조에 대한 산업분류코드가 없음 - 연료화되는 열분해유에 대한 별도 품질기준 마련. 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항목에 폐석유화학물질 원료 재생업 추가, 열분해유 제조업을 제조업종으로 포함 ⑤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제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등) -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부처	내용	일시
	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 의무 규제 완화 (미세먼지특별법 등) - 학교에 설치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해 매년 전수점검이 의무화되어 과도한 비용 유발 - 타 간이측정기와 동일하게 정기점검의무 폐지 (통합관제플랫폼 통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⑦ 생태·자연도 변경 내용 사전 확인을 위한 절차 강화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 생태·자연도안 정기고시 공고기간 및 공고방식 일정치 않아 변경내용 확인 접근성 낮음 - 매년 1분기 중 특정 월을 지정하여 정기고시 실시 및 언론보도 통해 정보 접근성 강화 <유통물류 : 3건> ① 도심 근린생활시설 내 풀필먼트 센터 입주 허용 (물류시설법, 건축법) - 최근 '주문 즉시 배송시설' (수요를 사전에 예측, 소형경량 화물을 미리보관, 주문시 즉시 배송) 확대 - 물류시설에 '주문 즉시 배송시설'이 정의되지 않아 도심 물류 인프라 확보 애로 - 도심 근린생활시설에 '주문 즉시 배송시설'이 입주 가능하도록 물류시설법 개정 ② 산업단지내 '기준건축면적률' 규정업종에 택배업 추가 (산업집적법, 산업단지 관리지침) - 택배업의 특성상, 부지 면적 대비 40%로 건축물 면적확보기준 적용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에 택배업 추가 및 운송업과 동일한 20%의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③ 택배 외국인 고용 특례 확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택배 물량 급속한 증가로 택배 상하차 분류지원 인력 부족 현상 심화 - 동포외국인 노동자 고용허용업종에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 (택배분야 하역 및 정제 단순 종사자) 추가 <경영일반 : 12건> ① 굴착공사 통신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지하매설물 기준 변경 (도로법 시행령) - 도로 굴착공사시 지하 통신시설물 관리자에 정보공유 미흡, 선로단선으로 인한 장애 발생 다수 - 굴착공사시 사전협의 대상인 주요 지하매설물에 전기통신회선설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여 공사에 따른 통신시설 보호 필요 ② 신재생·수소 개발사업으로 사업재편시 지분투자기준 완화 (공정거래법, 기업활력법) -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할 의무가 있어 사업재편시 공동지분 참여에 어려움 - 자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100% 지분소유 의무 폐지하고, 신재생 개발을 위한 사업재편시 소유의무 유예기간(3년)을 연장하거나 항구적인 예외 요건 신설	

부처	내용	일시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허용 (방송법 시행령) -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홍보·판매하는 방송 송출 불가 - 지역채널에서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 ④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군 확대 (보험업법 시행령) - 헬스케어 업종은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소유 가능하나, 대인헬스케어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없음 - 주된 사업이 보험경영과 관련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및 최소적립금 미달 기업 과태료 부담 완화 (퇴직급여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비율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중소기업에 대한 최소적립비율 기준 완화, 위반시 지도편달 후 2차 위반부터 과태료 부담토록 개선 ⑥ 플랜트 공사의 외국인력 고용 허용 (외국인고용법,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 플랜트 공사는 외국인력의 고용 불가로 국내 인력부족 및 고령화에 따른 현장운영상 어려움 - 외국인력 고용 제한을 원도급사에 한정, 단순노무 근로자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 제한 폐지 ⑦ 준방폭식구조의 흡독 설치 의무 완화 (총포화약법 시행령,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 준방폭식구조 제조시설 및 공업용뇌관 조립공실 기준으로 부지확보 애로 및 공사비 부담 과도 - 1면 흡독 설치 의무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및 뇌관 조립공실 다양화 가능하게 개정 ⑧ 조달청 입찰 시 납품기준 및 공고기준 개선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 규정) - 직전 계약만료 1개월 前 입찰공고 및 1개월 內 납품요구로 인한 기업 부담 심화 - 직전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입찰 공고토록 규정, 납품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확대 ⑨ 新 유형 유기기구 규정 마련 및 안전성검사 시행자 확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새로운 유형의 유기기구는 관련 정의 및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추진시 혼란 발생 - 관광진흥법령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분류 보완, 제조 및 유통업자도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실시 가능토록 개선 ⑩ 공동도급 업무 분담비율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승강기법 시행규칙) - 승강기를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관리기술인력 보유 기준은 전체 공동도급 승강기 수에 비례하며, 공동도급 업체 모두에게 적용 - 공동도급자간 업무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관리인력 보유하도록 개선	

부처	내용	일시
	⑪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절차 개선 (승강기법 시행령) - 유럽 등 해외(7개)에 비해 국내 승강기 안전인증대상 부품(20개)이 과도해 인증비용 부담 심화 - 승강기 안전인증대상 부품을 유럽기준과 같이 7개로 축소, 안전인증 소요기간 단축 ⑫ 수족관 시설의 전문휴양업 등록 관련 법령정비 (관광진흥법, 박물관미술관법) - 동물원수족관법이 신설되었으나, 기존 법령 정비가 지연되어 기업의 이중 준수부담 발생 - 박물관미술관법에 규정된 수족관 관련 조항 삭제 및 관광진흥법 전문휴양업 등록기준을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 <국민 생활 밀접 규제 : 6건> ① 평생교육시설 등록 범위 확대 (평생교육법 등) - 평생교육시설(교육대상 어른 한정), 학원(22시 이후 수업 불가) 관련 규제로 인해 초·중·고등학생 천문우주교육·체험시설의 인허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애로 - 평생교육시설 교육대상을 초등학생 및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적용 ②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허용 (약사법) -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운영 유인편의점은 판매가능, 무인점포·단축운영매장 판매 불가 - 안전상비의약품의 자동판매기 판매를 허용하여, 소비자 편익 증대 필요 ③ 동네마트의 온라인 주류배달 서비스 허용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전통주제조사 등으로 한정. 소매유통업자 등 온라인 판매 금지 - 동네마트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류배달 서비스 허용으로 영세 소매업자 매출 증대효과 기대 ④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수단 제공 의무완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통신사업자는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수단(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미사용 고객에 정기적으로 안내문자 송부 - 시중에 출시된 타 차단앱 사용중인 고객에도 정기적으로 문자송부하여 고객불편 유발 - 소비자들이 시중에 출시된 유해매체 차단앱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관련 규제 개선 ⑤ 도심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완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전부 확보 필수 - 도심지역의 경우 높은지가 및 건물가격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한 경우가 많아 요양시설 설치에 애로 - 도심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소유권 기준 완화, 민간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급 활성화 ⑥ 민간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생명윤리법 등) - 민간 유전자검사기관 실시 가능 항목은 피부노화, 탈모, 혈압 등 70종에 불과 - 암과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적 취약성 확인 불가 -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검사 항목에 질병에 대한 유전자 검사 추가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22.10.18. 시행)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되,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특허청이 디자인등록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디자인등록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 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022-10-18
	• 「상표법 일부개정」 (2022.10.18. 시행)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되,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특허청이 상표등록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상표등록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022-10-18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2022.10.18. 시행) 현행법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그 최대 발전설비용량을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보다 낮은 30만킬로와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50만킬로와트로 상향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온실가스감축 및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2022-10-1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또한 전기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전력시장의 참여 주체인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해서도 한국 전력거래소에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한 지시의 기준과 사유가 포함되도록 함 마지막으로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변경 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2023.4.19. 시행 예정) 중소기업은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기업에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고 향후에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하지만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채권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중소기업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그 대금을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중소기업팩토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2022-10-18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2022.10.18. 시행) 한국형 뉴딜 등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형소공인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책무를 명시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내용에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도시형소공인의 노후화된 장비 교체, 시제품 개발지원, 작업장 디지털화 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2022-10-18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4.19. 시행 예정) 중소기업기술 탈취는 공정한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나,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기술 침해를 당하고도 소송제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022-10-1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이에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하여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침해 행위를 신고하려는 중소기업자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타법을 통해 비공개 승인받은 영업비밀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관리번호인 등록 신고번호(타법상 비공개 승인대상 아님)를 통해 타인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타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받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번호도 비공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타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받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도 비공개 승인된 것으로 간주 (안 제7조) - 이 경우, 양수자가 해당 화학물질이 적법하게 등록 및 신고된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여부는 표기 ※ 의견 제시기간 : 10/18(화)~11/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로 제출	2022-10-18
환경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업정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지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태양광 패널을 현행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의 예외로써 제품별 연간 출고량 중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을 매년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정하고,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회수 부과금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 단위 비용 및 회수 단위비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자에게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여하고 온도교환기기군, 디스플레이기기군 등의 제품군별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간 재활용 의무량을 산출하는 제도	2022-10-1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활용의무량 감경대상을 현행 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에서 모든 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실적으로 확대 (안 제15조의2제3항·제4항) ② 태양광 패널을 법 제16조제4항에 의한 특정제품으로 정하고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 고시 등의 근거 마련 (안 제15조의3제1항·제2항·제4항) ③ 특정제품 출고량 실적제출 의무를 현행 전기·전자제품(49종) 출고량 실적 제출의무 규정에서 분리하여 조항을 신설하고,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 (안 제15조의3제3항·제15조의6·제1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22조·제33조·제34조·제35조·별표4·별표6) ④ 태양광 패널 회수의무량 산정기준을 현행 전자제품(49종)과 별개로 마련하고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부과를 위한 단위비용 신설 (안 제15조의7제1항·별표3의4·별표5) ⑤ 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과 절차 마련 (안 제31조의2·제31조의3·별표7의4) ※ 의견 제시기간 : 10/18(화)~11/10(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재활용과)로 제출	
국토 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2.7.21)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를 허용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 대상 지역·지구 확대 (안 제8조의4) -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가 허용되는 지역·지구로 포함 ※ 의견 제시기간 : 10/19(수)~11/29(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로 제출	2022- 10-1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중소벤처 기업부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업종을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시로 위임하고, 능률성이 요청되는 실태조사 업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업종 규제 완화 (안 제11조의9제2항제6호) - 첨단 테크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은 현재 입지난으로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업종 및 산업 확대 -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참여업체 등을 벤처집적시설 입주를 허용해 민간의 벤처집적시설 건설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② 벤처기업 실태조사 업무를 민간위탁 근거마련 (안 제19조제4항) - 벤처기업 관련 근간을 이루는 업무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라 능률성이 요청되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조사 통계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 추진 ※ 의견 제시기간 : 10/19(수)~11/30(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로 제출	2022-10-19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22.10.18 시행)에 따른 법 인용조항의 수정 및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 개념의 명확화, 창업진흥원에 참여제한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변경시 필요한 범죄경력자료의 처리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 개념의 명확화 (안 제3조) -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정 ② 법 인용조항(부담금면제) 수정 (안 제10조) - 시행령상 법 인용조항을 “제2항”에서 “제4항”으로 개정 ③ 창업사업 참여제한 업무의 창업진흥원 위탁 근거 규정 (안 제38조) - 창업진흥원 위탁 업무에 참여제한 관련 업무 추가	2022-10-2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④ 중소기업 상담회사 민감정보 처리(범죄경력 정보 요청) 근거 마련 (안 제4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 의견 제시기간 : 10/19(수)~11/17(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총괄과)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경쟁제한성이 희박하고 기업의 단순 투자 목적이 명백한 기업결합 유형에 대하여 간이심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수직결합·혼합결합에 적용되는 안전지대 규정을 보완·확대하여 기업결합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간이심사 대상 확대 (안 III. 4.) - PEF에 대한 추가 출자에 대해 간이심사 적용 (안 III. 4. (5) 신설) - 벤처,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수반된 임원겸임에 대해 간이심사 적용 (안 III. 4. (6) 신설) - 그 외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근거 마련 (안 III. 4. (7) 신설) - 부동산 양수도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범위 확대 (안 III. 4. (4) 개정) ②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외국회사 대상 기업결합 관련 간이심사 규정 정비 (안 III. 6. 개정) - 국내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요소 구체화 및 적용되는 사례 예시 ③ 비수평결합(수직·혼합결합)의 안전지대 확대 (안 VI. 1. 가. (2) (나)) - 관련된 각 시장에서의 당사회사 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시장집중도와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 ※ 의견 제시기간 : 10/18(화)~11/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로 제출	2022-10-18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공직자가 로펌 등에 재취업한 후 로비활동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접촉의 신고대상을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정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다소 약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가 사적 접촉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강화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5조제1항)	2022-10-18
기획재정 위원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1인)」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세법상 취급의 상이함으로 인해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는 세무목적상 과세대상인 실체(법인)로 보지 않는 반면, 해당 단체의 투자자 거주지국에서는 과세 실체로 보는 이른바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 및 해당 단체의 투자자 거주지국 모두에서 과세되지 않는 이중비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을 권고하였음 OECD의 이러한 권고에 따라 2022년부터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은 자국 내 설립된 단체가 역혼성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과세 실체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바, 이에 따라 국내 기관투자자가 EU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이에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 세무 목적상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 신설)	2022-10-1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외국물품을 보관, 제조,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특허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중 하나로서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해야 하므로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위축, 고용불안정이 야기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횟수의 제한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면세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76조의2제6항)	2022-10-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한국 소비재 산업 및 관광산업, 국가이미지 제고에 현격한 공헌을 하고 있는 한류콘텐츠 수출과 제작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해외 주요 경쟁국가인 미국, 영국 등은 약 25% 수준의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3~10% 수준의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 대비 산업적 파급력에 한계가 있음 더구나 거대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콘텐츠사업자들이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며 한국진출을 가속화하고 이에 따라 국내 콘텐츠 제작사 역시 제작비 경쟁으로 재정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바, 국내콘텐츠 업계의 제작의지 고취 및 지속가능한 K-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됨 특히 미국 등 거대 미디어·플랫폼 사업자와 중국 등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자들의 진출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이용률이 확대되는 등 영상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확대하는 한편, 방송과 영화로 국한되어 있는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위한 영상콘텐츠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안 제25조의6제1항)	2022-10-1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u>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30인)</u>」 현행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 결정 또는 검증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통해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매년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관세행정 지원 성격의 업무를 위주로 수행하고 있어 국회 등으로부터 원산지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고 있음 저가 수입산의 국산 둔갑에 따른 소비자와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최근에는 해외에서 원산지기준 강화 등을 통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원산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 전문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을 설립함 (안 제233조의2제1항) ②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를 정함 (안 제233조의2제4항) ③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233조의2제5항) ④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산지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함 (안 제233조의2제6항·제7항)	2022-10-1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등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Internet Data Center) 등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 등으로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재난 등의 예방을 개별 기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음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방송통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5조)	2022-10-17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보호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10월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사태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인 카카오의 체계적이지 못한 사후관리로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차질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자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후속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46조 및 제76조)	2022-10-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u>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의원의원 등 11인)</u>」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의 흐름과 품질이 적정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송전·배전 등에 대한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그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배전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 제어를 시행하는 경우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출력 제어란 발전 전력량이 과도하게 많은 시점에 송·배전사업자가 전기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발전설비의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로,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풍력 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전력이 과도하게 공급될 경우 송·배전망의 과부하에 따른 정전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출력 제어 조치가 빈번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실도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0조)	2022-10-19
보건복지 위원회	• 「<u>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1인)</u>」 담배 연기속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담배 유해성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주요 담배 유해성분들을 분석하고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자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유해성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고는 있으나, 정작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은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함 우리 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를 국정과제에 담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음	2022-10-1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담배의 유해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적 담배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안 제1조 등)	
국토교통 위원회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0인)」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간접투자회사로서, 현행법은 자산 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그리고 채무 상환을 위한 기업 매각 부동산 등이 70% 이상인 자산을 위탁하여 투자·운용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3가지 형태가 있음 그러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달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더라도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설립자본금은 70억 원으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50억 원보다 많음에도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점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자의 배당수익이 줄어들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하는 악순환과 배당소득감소에 따른 기존 투자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져, 현재 300여개의 부동산투자회사 중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4개에 불과하며, 2015년 이후 신규 등록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없는 상황임 이에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인·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인 주식 공모기간을 인·허가 당시 자산을 부동산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된 부동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함 (안 제5조의2 신설, 제14조의8제2항)	2022- 10-17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정감사 (계속)	10/4(화) ~ 10/24(월)	<u>국정감사 종합일정표 (10/7 기준)</u>	
본회의	10/25(화)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0/27(목)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 안건심의	
국회도서관	10/24(월)	「소셜시그널」 제29호 발간 - 무인 자동화	
	10/25(화) 10:30	제2회 국가전략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신안보와 국가전략	국회도서관 107호
	10/26(수)	「World & Law」 2022-20호 발간 - 아동수당, 언제까지? 얼마나?	
	10/27(목)	「현안, 외국에선?」 제46호 발간 - 영국의 희귀의약품 기금 제도(Innovative Medicines Fund)	
입법조사처	10/26(수) 10:00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식품표시 효율화 및 간소화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예산정책처	10/24(월)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발간	
	10/24(월)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	
	10/24(월)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발간	
	10/24(월)	「NABO Focus」 제52호 발간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	

[별첨1] 제400회 국회(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운영위	10/25(화) 본회의 산회후	전체회의	- 2022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법사위	10/26(수) 10:00	법안제1소위	- 법률안 심사
교육위	10/28(금)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회
복지위	10/26(수) 09:00	현장시찰	- 소록도 및 목포(병원선)
농해수위	10/27(목) 10:00	전체회의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특별위	10/25(화) 14:00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26(수) 10:00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특위 전체회의	- 부산엑스포 유치 진행 경과 보고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0/25(화) 07:30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민주공화국을 위한 권력구조 개혁	강병원·고영인·고용진· 권인숙·김민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0/25(화) 14:00	탈북 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태영호 의원실, THINK	의원회관 8간담회실
10/25(화) 14:00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사회변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전략	김영식 의원실,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 협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
10/26(수) 07:00	위기의 글로벌 경제, 대한민국 산업혁신의 길을 묻다	정우택·노웅래 의원실, 상생과통일포럼	CCM빌딩 12층
10/26(수) 10:00	우크라이나전쟁과 진보진영의 대응 정책 세미나 - 동아시아 지정학의 맥락에서	윤호중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0/26(수) 14:00	국회물포럼 제19차 토론회 - 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변재일 의원실, 국회물포럼	의원회관 2세미나실
10/27(목) 15:30	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임종성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57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10/18(화)	<u>「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6호 발간</u> - 흡연율 감소를 위한 주요국 입법동향	
예산정책처	10/20(목)	<u>「NABO 경제 동향」 10월호 발간</u>	
입법조사처	10/20(목) 14:30	<u>외국입법·정책 분석</u> -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백대용 변호사 |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변호사 |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변호사 |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변호사 |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 • 나인선 변호사 |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 • 최유리 변호사 |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변호사 |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변호사 |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 • 박건백 변호사 |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 • 김은혜 변호사 |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